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증치세 납세신고 관련사항 조정에**  **관한 공고**  국가세무총국 2014년 제58호  소형·미형(微型)기업 성장지원 관련 조세우대 정책을 확실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이 증치세 납세신고 관련사항을 조정하였는 바,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  1. <증치세 신고 관련사항 조정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>(국가세무총국 2013년 제32호 공고)의 첨부문건3 <증치세 납세신고서표(소규모납세인 적용)>에 "소형·미형기업 세금면제 매출액", "징수기준 미달 매출액", "기타 세금 면제 매출액", "당기 세금면제액", "소형·미형기업 세금면제액", "징수기준 미달 세금면제액" 등 항목을 추가한다. 조정 후의 양식은 첨부1을 참조하고 작성설명서는 첨부2를 참조한다.  2. 이 공고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32호 공고의 첨부문건 3과 첨부문건 4는 동시에 폐지한다. 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.  첨부: 1 <증치세 납세신고표(소규모납세인 적용)> 및 별첨자료  <http://www.chinatax.gov.cn/n2226/n2271/n2272/c814105/part/814121.doc>  2. <증치세 납세신고표(소규모납세인 적용)> 및 별첨자료 작성설명  <http://www.chinatax.gov.cn/n2226/n2271/n2272/c814105/part/814122.doc>  국가세무총국  2014년 10월 13일 |  | **关于调整增值税纳税申报有关**  **事项的公告**  国家税务总局2014年第58号  　　为认真落实扶持小微企业发展的有关税收优惠政策，国家税务总局对增值税纳税申报有关事项进行了调整，现公告如下：  　　一、在《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增值税纳税申报有关事项的公告》（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32号）附件3《增值税纳税申报表（小规模纳税人适用）》中，增设“小微企业免税销售额”、“未达起征点销售额”、“其他免税销售额”、“本期免税额”、“小微企业免税额”、“未达起征点免税额”等栏次。调整后的表式见附件1，填写说明见附件2。  　　二、本公告自2014年11月1日起施行。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32号附件3、4内容同时废止。  特此公告。  　　附件：1.《增值税纳税申报表（小规模纳税人适用）》及其附列资料  <http://www.chinatax.gov.cn/n2226/n2271/n2272/c814105/part/814121.doc>  　　　　　2.《增值税纳税申报表（小规模纳税人适用）》及其附列资料填写说明  <http://www.chinatax.gov.cn/n2226/n2271/n2272/c814105/part/814122.doc>  国家税务总局  2014年10月13日 |